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30

발의연월일: 2020. 6. 19.

발 의 자: 송옥주·박찬대·안호영

민병덕 · 정춘숙 · 임종성

박용진 · 서삼석 · 이성만

박 정・유동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기술의 발달이 가져 올 다양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

특히, 미국 백악관의 「인공지능, 자동화 그리고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기존 일자리가 없어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고용 구조의 변화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교육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근로자들이 적절한 교육과 재교육을 받아 미래 일자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인력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업무능력 등을 지속적으로 계발·향상할 수 있도록 재교육 또는 재훈련 을 제공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3조의2(산업인력의 재교육·재훈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 인력이 지능정보화 사회로의 이행 등 산업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업무능력 등을 지속적으로 계발·향상할 수 있도록 재교육 또는 재훈 련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인력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재교육 또는 재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재교육 또는 재훈련의 실시기관, 실시방법 및 실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u><신 설></u> | 제13조의2(산업인력의 재교육·재 |
| | 훈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 | 는 산업인력이 지능정보화 사 |
| | 회로의 이행 등 산업 환경의 |
| | 변화에 적응하고 업무능력 등 |
| | 을 지속적으로 계발·향상할 수 |
| | 있도록 재교육 또는 재훈련을 |
| | 실시할 수 있다. |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 |
| | 업인력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
| | 재교육 또는 재훈련을 실시하 |
| | 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
| | 지원을 할 수 있다. |
| | ③ 제1항에 따른 재교육 또는 |
| | 재훈련의 실시기관, 실시방법 |
| | 및 실시절차, 그 밖에 필요한 |
| |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